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20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이인영 · 장철민 · 이기현
이정문 · 김영환 · 전진숙
소병훈 · 문진석 · 채현일
김성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적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3.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행정기관등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에 제3호의2 및 제1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와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16의2.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

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를 받거나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제안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해당 행정기관등이 적극행정을 할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회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들의 장에게 적극행정을 할 것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절차·처리결과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소극행정 신고는 제12조제16호의2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들의 장에게 신고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국민신청”은 “소극행정 신고”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적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u><신설></u>	5의3.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행정기관등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기능)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와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 16. (생략) <u><신설></u>	4.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설

17. ~ 21. (생략)

<신설>

치·운영

17. ~ 21.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를 받거나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제안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해당 행정기관등이 적극행정을 할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 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회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들의 장에게 적극행정을 할 것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절차·처리결

<신 설>

과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소극행정 신고는 제12조제16호의2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들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국민신청”은 “소극행정 신고”로 본다.